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3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eonbuk@sadd.or.kr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6년 4월 15일
담당	양은주 063-247-1503	페이지	6 페이지
제목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접수 전북 기자회견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타고, #다른 도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우리를 이제 태워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북 지역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접수 기자회견

- 일 시 : 2026. 4. 15(수) 오후 3시
- 장 소 : 전주지방법원앞

주최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며, 전북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 막는 물리적 구조와 사회적 편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와 장애인권단체들은 2026년 4월 15일 오후3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버스회사와 버스터미널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4. 비장애인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북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은 버스터미널에만 가면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지만, 장애인은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가 없어 이동을 포기하거나 장애인콜택시를 미리 예약해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외친 지 12년째입니다. 장애인들은 2014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투쟁을 시작으로, 매년 추석과 설날에 “장애인도 버스타고 이동하고 싶다” 고 지역에서 함께 외쳐왔습니다.

8. 그 결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은 휠체어석을 만들면 좌석이 줄고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이러한 버스 회사들의 행태가 분명한 차별임을 밝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구제 조치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도록 소송을 제기합니다.

10. 2014년 명성운수와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서울에서 시작된 소송과 2017년 광주에서 금호고속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버스 회사들의 차별을 인정하고,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1.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역시 이번 소송으로 우리 지역에도 장애인이 시외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소를 제기 받는 버스회사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타고, #다른 도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우리를 이제 태워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북 지역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접수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후3시
▌장소 : 전주지방법원앞
▌주최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김성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참가단체 소개	
1. 대표발언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직무대행)
2. 원고인 발언 1	신동성 (이동권연대전북지부 전주시지회장)
3. 원고인 발언 2	심지선 (이동권연대전북지부 군산시지회장)
4. 변호인 발언	홍정훈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우리도 이제 버스에 탑승하겠습니다,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장애인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위한 소송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장애인도 버스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법원에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다. 비장애인만 태우고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가 아니라 장애인도 시민으로 동등하게 이동하기 위해, 그런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번 소송으로 대한민국에 묻는다. 왜 장애인은 24년동안 이동권을 외쳤음에도 버스조차 타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워 주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우리 OO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동하기를 포기한다. 또는 각자 방법을 구해 알아서 이동한다. 운수회사들은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만들면 비장애인이 탈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손실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한다. 비장애인의 이동은 권리이지만, 장애인의 이동은 손해로 치부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버스회사들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외고속버스는 모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다. 그런데 장애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임에도 왜 시외고속버스에 탈 수 없어 왔는가. 이미 법원은 버스회사들의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라고 판결해왔다. 그리고 휠체어도 탈 수 있는 버스의 도입을 명령했다. 버스회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오늘 이 소송은 우리 전북 지역 뿐 아니라,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대구•경남•부산 8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 사회는 장애인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량과 드론 택시가 논해지는 지금, 장애인은 버스도 탈 수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랬듯이 또 다시 먼저 나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어느 하나 배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이 가장 먼저 앞설 것이다.

재판부에 촉구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이 도시 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

외고속버스를 늘리고 터미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기된 이 소송을 조속히 진행해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버스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버스회사들은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전체 노선에 도입해라.
하나. 버스회사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차별해온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정부와 터미널 회사들은 장애인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여객수단을 개선하라.
하나. 재판부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최대한 빠르게 보장하라.

우리는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날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6년 4월 15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외 장애인권단체 일동

[발언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지부장 홍정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찾겠습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서 명절마다 시외·고속버스 탑승 투쟁을 하는 것은, 떼 쓰기도 아니고,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승·하차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통사업자에게 설치 의무를, 지자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무 및 교통사업자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법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교통사업자들은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등 탑승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한 광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하면, 청각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할 권리를 찾는 것은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도 법적 투쟁을 시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 누구나 여행하고 가족을 만나며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본 사건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와 함께, 전북지역의 시외·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전북고속과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을 상대로, 버스와 여객터미널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와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기대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